

기본소득이 내게 주는 의미들

이권능

기본소득당 동물권생태의제기구 어스링스 운영위원

가장 진전된 사회보장과 복지국가의 구축을 학문적·운동적 목표로 삼는 본 저자가 기본소득을 처음 접하고 느낀 감정은 깊은 당혹감이었다. 기본소득은 일종의 소득보장제도로 읽혔기에, 소득보장체계가 이미 자리 잡은 서구 유럽의 나라들은 기본소득을 필요로 할까? 이 제도는 기존의 소득보장체계를, 더 나아가 사회보장체계 자체를 대체하려는 시도인가? 19세기 중반의 노동보호를 위한 사회입법들과 19세기 말 사회보험제도의 도입 등으로 성립된 복지국가는 지난 150여년간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오늘날에 이르렀는데, 기본소득제도로 대체하려는 것은 실현가능성의 측면에서 어찌 보면 무모한 도전이라고까지 여겨졌다.

하지만 기본소득론을 조금씩 더 이해할수록 내게 주는 긍정적 신호는 커져갔다. 복지국가의 한계를 고민하던 나는 기본소득론이 기존 복지국가에 제기한 문제들의 대부분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신자유주의가 낳은 부정적 효과들에 대한 비판도 복지국가론자와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 노동중심으로 구축된 기존의 사회보장체계는 변화하는 노동의 조건과 형태에 대응하기가 어렵다. 완전고용이 최선의 선택인지도 의문스러울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이 생계유지를 위해 돈을 버는 노동에 묶이고, 자신이 원하고 일을 하는 작업으로서의 노동이 잊혀지는 것은 근본적 문제 중 하나이다. 노동이 탈상품화 되지 않는 이상, 자유는 크게 구속될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특히, 기본소득의 철학과 기존 제도들과의 연계 노력은 제도의 새로운 구성과 체제전환에 대한 사회학적·철학적 상상의 폭을 넓혀 주었다. 미래의 노동은 달라져야 한다는 문제의식, 노동의 전환을 위한 기본적 생계의 온전한 보장, 생태 중심의 체계 변환, 소비 축소를 통한 삶의 중심잡기 그리고 이들을 관통하는 개인적

자유의 진전된 실현 등이 상상의 토대를 제공했다. 무엇보다도 상상은 복지국가와 동시에 기본소득론에 대한 의미 있는 질문을 낳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은 새로운 제도들과 제도들의 운영 원칙들을 조금씩 정교하게 만들고 있다.

그간 들어난 질문들을 몇 가지 살펴보자면, 우선 사회보장체계가 잘 구축된 서구 유럽의 나라들은 기본소득에 대한 어떤 토대를 갖고 있는가이다. 2017년 기준 OECD 자료 중 공공사회지출 현금급여의 1인당 지급액을 보면, OECD 평균은 매달 862,755만원(2017년 미달러 평균환율인 1130.48원 적용)이고, 사회보장의 성숙도가 더 높은 북유럽 나라들은 매달 1,300,000원에서 1,500,000원 정도이며, 독일, 프랑스 등의 대륙국가들은 1,260,000원에서 1,400,000원 정도이다. 전체 현금급여에서 33-44%를 차지하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현금급여를 제외하더라도, 1인당 현금급여액은 어림잡아 1,000,000원 전후에 이른다. 기본소득이 목표로 상정한 ‘기본적 생계의 유지를 위한 현금급여’는 어쩌면 이들 나라에서는 이미 다른 형태로 실현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기본소득은 이 제도들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음을 설득할 보다 각별한 논리가 필요하다.

기본소득이 기존의 사회부조제도에 대한 비판도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사회보장체계에서 사회부조가 담당하는 비중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전체 사회지출의 5-8%를 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사회부조제도 자체가 다른 사회보장제도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원칙들에 모순되는 바들을 많이 갖고 있다. 어찌 보면, 사회부조제도는 사회보장이 아니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기본소득론이 제기하는 사회부조제도에 대한 비판은 복지국가론에 별다른 타격을 줄 수 없다. 오히려 복지국가는 사회부조제도를 폐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바로 이 지점에서 복지국가와 기본소득의 접점이 마련될 수 있다.

소득의 사회적 의미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낳는다. 인간에게 있어, 소득은 얻은 수입 자체가 아니라 그 수입으로 무엇을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우리는 의식의 해결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그리고 교육이나 여가활동에 소요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돈을 번다. 결국 소득 자체가 아니라, 소득을 가지고서 해소하고자 하는 욕구와 필요의 충족이 최종 목적이 된다. 그렇다면 욕구와 필요의 충족을 위한 다양한 방식과 도구들은 소득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된다. 즉 현물을 제공하여 소득이 사용될 여지를 없애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소득의 기능을 하는 것이 된다. 이를 받아들이면, 소득보장의 폭은 매우

넓어지게 된다. 기본소득은 이러한 소득보장의 사회적 의미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질문은 자유를 둘러싸고도 야기된다. 기본소득론은 제공되는 급여를 임의적으로 사용할 자유와 이 급여들로 인해 확보될 자유를 동시에 강조한다. 기본소득 급여는 ‘기본적 생계유지’를 목표로 하기에, 이것이 달성되어야 이를 토대로 형성되는 자유를 확보할 수 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반드시 달성되어야 하는 것이기에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강제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급여의 임의적 사용으로 인해 ‘기본적 생계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일차적으로는 제도의 목표달성이 실패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차적으로는 목표달성의 실패는 해당 사회구성원에게 고통과 불행에 선사할 것이고, 이런 상황의 해소를 위해 또 다른 사회적 급여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기본소득 급여라는 토대 위의 형성된 자유는 기본소득제도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이 토대 위의 자유를 극대화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다만, 정책들은 사회구성원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폭을 넓혀 주고 각 선택이 자유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채워져야 한다. 물론 기본소득제도가 정치체계, 경제체계, 문화체계 등과 연계될 때에는 기본소득의 원리와 원칙이 일관성 있게 통용되어야 한다. 이 지점에서 기본소득론은 보다 포괄적인 복지국가의 개혁과 접점을 만들 수 있다고 여겨진다.

기본소득이 우리에게 주는 비판과 상상은 기본소득론이 제시하는 내용들의 단순한 수용에 있지 않고, 그 내용들에 질문을 함으로써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질문들은 기본소득론을 보다 세밀하게 만들고 동시에 기존 복지국가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토대들을 제공한다. 다소 고루하기는 하지만 변증법적 융합도 가능해 보인다. 이러한 융합은 사회구성원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고, 특히 그러한 자유가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어지는 사회를 만드는데 크게 일조하리라는 기대가 있다.